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 
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안규백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귀환포로의 고령화 및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귀환포로의 의료지원비 신청에 있어 간병비 관련 증명서류 제출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개정임.

## 3. 주요내용

가.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 제출 내용 신설(시행규칙안 제7조 제1항)

- 1) 귀환포로의 고령화(평균 연령 94세)로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,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 간병비 지원에 대한 내용 미규정
- 2) 시행규칙 제7조(의료지원비의 신청) 제1항에 제2의3호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내용을 신설하여 귀환 국군포로의 간병비 부담 경감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의료지원 한도액 변경 없음)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방부령 제 호

##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3.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6257